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3호, 2013.8.6,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일부개정]

#### ◇ 개정이유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등 재해 정보 입력 방식을 실시간 입력방식으로 개선하고, 자연재해 피해현황 및 복구개요 등이 포함된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나라 강우의 특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사업계획 수립 및 설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에 군부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나.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수립,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7까지 신설, 안 제70조).

다. 자연재해의 발생·복구 현황 실시간 입력 및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 근거를 신설함(안 제34조제4항·제5항 및 제55조의2 신설).

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 확인·점검 및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으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의2 및 제4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 ◎법률 제1199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12조제2항 중 “관계 기관”을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유출저감 목표와 전략
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기본 방침
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연도별 설치에 관한 사항
4.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
5. 재해의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 방안
6. 유흥지, 불모지 등을 이용한 우수유출저감대책
7.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는 제19조의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본다.

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는 “제19조의3에 따라”로 본다.

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운동장·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법령정보**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국립·공립 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시설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①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4. 그 밖에 우수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의7(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①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설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기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연재해의 발생·복구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를 복구하면 그 현황을 실시간으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8조의 제목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의 대행)”을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제38조제1항제7호(중전의 제5호) 중 “방재안전대책에”를 “방재관리대책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8조의2의 제목 “(방재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을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의”를 “방재관리대책 업무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방재안전대책”을 각각 “방재관리대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를”을 “방재관리대책 업무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대행자 실태 점검) ① 소방방재청장은 대행자 등록 기준 적합 여부,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의 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

무를”을 “방재관리대책 업무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방재안전대책”을 각각 “방재관리대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를”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 실적”을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실적”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방재안전대책수립”을 “방재관리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재안전대책수립”을 “방재관리대책”으로, “그 업무를”을 “그 대행업무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① 소방방재청장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대행자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행자의 수주 실적 및 입찰 실적에 관한 사항
3.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

② 소방방재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법령정보**

- ④ 소방방재청장은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제55조에 따른 보고내용을 토대로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 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 현황 및 복구 개요
2.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3.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
4. 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
5. 부처별·사업별 예산집행내역(지방자치단체의 실질집행내역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내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로 한다.

제71조 중 “구호금품”을 “복구비용·구호금품”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를”을 “방

재관리대책 업무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2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의 6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는 이 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9. (생략)</p> <p>10. “구호금품”이란 자연재해를 입은 자에게 이 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p> <p>11. ~ 12. (생략)</p> <p>13.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료 조사 및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p> <p>14. ~ 16. (생략)</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9. (현행과 같음) (삭제)</p> <p>11. ~ 12. (현행과 같음)</p> <p>13.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p> <p>14. ~ 16. (현행과 같음)</p>
<p>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생략)</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p> <p>③ ~ ⑥ (생략)</p>	<p>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의 제정·운영) ①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기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p>	<p>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수유출저감 목표와 전략</li> <li>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기본 방침</li> <li>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연도별 설치에 관한 사항</li> <li>4.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li> <li>5. 재해의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방안</li> <li>6. 유희지, 불모지 등을 이용한 우수유출저감대책</li> </ol>

방재정보광장

**법령정보**

현행	개정안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p>	<p>7.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는 제19조의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본다.</p>
<p>(신설)</p>	<p>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운동장·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li> <li>2. 국립·공립 학교</li> <li>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li> <li>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li> </ol>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시설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①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34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 ①~③ (생략)</p> <p>(신설)</p>	<p>③ 제1항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li> <li>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li> <li>3.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li> <li>4. 그 밖의 우수유출에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li> </ol>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p> <p>제19조의7(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①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설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기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p> <p>제34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3항에 따른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연재해의 발생·복구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신설)</p> <p>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민간 부문에 맡길 수 없는 경우 또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 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 절차 및 활용계획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8조(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기초조사, 분석,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1.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p>	<p>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를 복구하면 그 현황을 실시간으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p> <p>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민간 부문에 맡길 수 없는 경우 또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 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 절차 및 활용계획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 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1.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p>

방재정보광장



**법령정보**

현행	개정안
<p>(신설)</p> <p>2.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신설)</p> <p>3.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p> <p>4.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평가</p> <p>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p> <p>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제38조의2(방재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소방방재청장은 제38조에 따라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제40조(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대행자는 제3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다른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의 대행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p> <p>2. 방재안전대책의 내용을 보존 할 것</p> <p>3. 방재안전대책 업무 수행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p> <p>② 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를 한꺼번에 하도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2.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p> <p>3.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p> <p>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p> <p>5.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p> <p>6.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평가</p> <p>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p> <p>②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38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소방방재청장은 제38조에 따라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제40조(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대행자는 제3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다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p> <p>2. 방재관리대책의 내용을 보존 할 것</p> <p>3. 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p> <p>② 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한꺼번에 하도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제41조의2(대행자 실태 점검) ① 소방방재청장은 대행자 등록 기준 적합 여부,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p> <p>② 소방방재청장은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의 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1. ~ 3. (생략)</p> <p>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p> <p>5. (생략)</p> <p>6. 방재안전대책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재안전대책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p> <p>7. 등록 후 2년 이내에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p> <p>8. (생략)</p> <p>② (생략)</p> <p>제44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① 제42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계약의 대행업무만을 계속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대행자로 본다.</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1. ~ 3. (현행과 같음)</p> <p>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p> <p>5. (현행과 같음)</p> <p>6. 방재관리대책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재관리대책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p> <p>7. 등록 후 2년 이내에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p> <p>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4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① 제42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방재관리대책 대행계약의 대행업무만을 계속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대행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대행자로 본다.</p> <p>제44조의2(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① 소방방재청장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행자의 현황에 관한 사항</li> <li>2. 대행자의 수주 실적 및 입찰 실적에 관한 사항</li> <li>3.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현황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li> </ol> <p>② 소방방재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소방방재청장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④ 소방방재청장은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p>

방재정보광장

**법령정보**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p> <p>제71조(압류의 금지)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급된 구호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p> <p>제77조(벌칙) ①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생략)</p> <p>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생략)</p> <p>2.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p> <p>3. ~ 6. (생략)</p> <p>&lt;신설&gt;</p>	<p>로 정한다.</p> <p>제55조의2(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제55조에 따른 보고내용을 토대로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피해 현황 및 복구 개요</p> <p>2.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p> <p>3.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p> <p>4. 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p> <p>5. 부처별·사업별 예산집행내역(지방자치단체의 실적집행내역을 포함한다)</p> <p>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내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p> <p>제71조(압류의 금지)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급된 복구비용·구호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p> <p>제77조(벌칙) ①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p> <p>3. ~ 6. (현행과 같음)</p> <p>7.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p>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 2014.8.7] [법률 제12001호, 2013.8.6,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일부개정]

#### ◇ 개정이유

최근 중국·일본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유례없이 심각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지진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예측불가능한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국가차원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를 정하는 등 지진방재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협력·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진해일에 대한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통해 지진해일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방재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지진방재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진방재정책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중앙대책본부장은 내진설계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령정보**

◎법률 제12001호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진방재종합대책”을 “계획”으로 한다.

제3장에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진방재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진방재업무의 체계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진방재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지진방재업무의 국내외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진방재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 추진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지진방재정책심의회) ① 지진방재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지진방재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2. 제14조제4항의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3. 제15조의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
  4. 그 밖에 지진방재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심의회의 사무는 소방방재청에서 수행한다.
- ③ 심의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그 밖에 심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지진해일 대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각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청을 받은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작성지침의 배포,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평가·점검·포상 등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있다”를 “있고, 지진방재기술 발전을 위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의 개최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내진설계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서 정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지진방재기술 및 제도 등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 중 “비용(제25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을 “비용(제16조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의 수립·추진 비용과 제25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정보**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9조의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진방재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li> <li>2. 지진방재업무의 체계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li> <li>3. 지진방재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li> <li>4. 지진방재업무의 국내·외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진방재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p> <p>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 추진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9조의3(지진방재정책심의회) ① 지진방재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지진방재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합계획</li> <li>2. 제14조제4항의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li> <li>3. 제15조의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li> <li>4. 그 밖에 지진방재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② 심의회의 사무는 소방방재청에서 수행한다.</p> <p>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10조의2(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지진해일 대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중앙대책본부장은 각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청을 받은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작성지침의 배포,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평가·점검·포상 등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⑤ 그 밖에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1조(지진방재 교육 및 훈련·홍보) ① (생략)                      ②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지진 현상을 체험하고,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위하여 지진체험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다.</p> <p>③ ~ ④ (생략)</p>	<p>제11조(지진방재 교육 및 훈련·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지진 현상을 체험하고,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위하여 지진체험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고, 지진방재기술 발전을 위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의 개최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 「공유수면매립법」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排水閘門)                      3. ~ 30. (생략)                      ② ~ ③ (생략)                      &lt;신설&gt;</p>	<p>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排水閘門)                      3. ~ 30.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내진설계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서 정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lt;신설&gt;</p> <p>제22조(지진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① 중앙본부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소관 사항에 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22조(지진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① 중앙본부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소관 사항에 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지진방재기술 및 제도 등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지진재해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25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p>	<p>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지진재해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16조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의 수립·추진 비용과 제25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p>

방재정보광장





법령정보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7] [법률 제11897호, 2013.7.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저수지·댐의 붕괴 등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저수지·댐으로 지정·고시된 저수지·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댐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의제하여 재해위험저수지·댐에 대한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개정법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댐이 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댐으로 지정·고시되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⑥ 제5항에 따른 위험저수지·댐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 ◎법률 제11897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저수지·댐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댐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위험저수지·댐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 및 관리) ① ~ ④ (생략)</p> <p>⑤ 제1항에 따른 위험저수지·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댐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신설〉</p>	<p>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 및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댐이 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댐으로 지정·고시되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p> <p>⑥ 제5항에 따른 위험저수지·댐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